

교원인사규정

제정일자 2002.09.01
 개정일자 2022.10.01
 소관부서 총무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동의학원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동의과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직위) 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한다. <개정 2020.03.01.>
 [전문개정 2016.02.0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강사에 대한 인사규정은 별도로 두어 적용한다. <개정 2020.03.01.>
 [전문개정 2016.02.01.]

제4조(임용권자) ① 총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4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학교법인 동의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07.11.01.>
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신설 2012.05.01.>

제5조(겸직 및 교외활동의 제한) ① 교원은 본 대학교 이외의 타 기관에 속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② 다만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타 기관에 촉탁 또는 위촉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원은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교외활동 또는 교외의 개인이나 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단, 교육공무원법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교원의 겸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조(교원의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

②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③ 정년에 도달한 교원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명예·조기퇴직) ① 교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은 명예퇴직 수당을, 15년 이상 근속한 교원은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2.01.>

③ 명예·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05.01.]

제8조(교원정원의 조정) 총장은 계열/학과별, 직위별 인원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비율과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원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임면, 승진, 정년보장 임용심의 및 교원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업적평가) ① 교원의 승진임용·재임용·재계약·성과급 지급 등 교원인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적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교원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02.01.]

제11조(임용절차) 교원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제11조의2(급여) ① 교원의 급여는 본 대학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2006년 3월 1일부로 임용되는 신규교원부터 연봉으로 계약한다. <개정 2011.11.01.>
 ② 연봉으로 계약 시에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한다.
 ③ 연봉 책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교 보수 규정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01.]

제 2 장 계 약

제12조(계약) ① 교원의 임용은 본인과의 계약으로 결정하며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2.01.>
 ② 교원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각 직급별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5.01., 2016.02.01., 2019.03.01.>

직 위	기간제 임용	비 고
조 교 수	3년(2년)	()신규 임용되는 조교수는 1차에 한하여 2년으로 임용
부 교 수	6년	
교 수	정년(3년)	()신규 임용되는 교수는 1차에 한하여 3년으로 임용

- ③ 교원을 임용할 때에의 그 임용기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임용기간 중에 승진, 전직, 강임 또는 계약이 갱신된 자에 대하여는 그 발령일로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정한다.
- ④ 학기 도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 ⑤ 공무로 국외 파견 또는 국외 출장 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 기간 중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재계약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
- ⑦ 정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삼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계약 여부의 통보) ①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

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1.>

②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계약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1.>

제14조(임용계약의 심사) ① 재임용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평가된 교육·입시활동, 산학·연구활동, 봉사·수범활동영역 업적평점을 근거로 한다. <개정 2012.05.01.>

② 교원인사위원회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계약이행사항 여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희망하는 교원 또는 재임용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봉사에 관한 사항
3. 대학 기여도에 관한 사항
4.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계법령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③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임용시기) 교원은 임명장, 계약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신규임용

제16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다음의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고, 본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05.01., 2020.03.01., 2022.10.01.>

연구·교육 경력연수 직명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강사	1	1	2	1	2	3

※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

② 교육경력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전공학과 및 그와 관련되는 학과의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을 말한다.

③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 1종류만 인정한다.

④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1. 교원이 담당하는 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2. 산업체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⑤ 제3항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및 산업체에서 담당하는 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은 별표 2에 의하여 환산한다.

[전문개정 2007.11.01.]

제17조(신규임용) ① 신규 임용시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1일과 9월1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개정 2012.05.01.>

1. 신규임용 교원은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3.01.>

2. 삭제 <2020.03.01.>

3.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연구 및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으로, 특수과목을 전공한 사람 및 그 경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신규임용방법은 특별한 경우(재외한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 전공교수 등 특별초빙)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01.]

제18조(신규임용의 제한) ① 교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학생모집단위별로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교원이 특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신규 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

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그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3.10.>

제19조(신규임용 절차) 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신규임용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개정 2020.10.01.>
 2. 강의심사 : 기초·전공심사결과 3~5배수 내외로 공개강의, 실기테스트 등의 평가를 신규 임용심사에 반영 <개정 2020.10.01.>
 3. 교원채용심의 : 기초·전공심사 및 강의심사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기초·전공심사조서, 강의심사조사서를 통해 심의, 면접대상자 선정 <개정 2020.10.01.>
 4. 면접심사 : 교원채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및 교수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의 심사
 5. 삭제 <2020.10.01.>
 6. 교원인사위원회 종합심의 : 기초·전공심사, 면접심사 등의 결과를 확인하고 합산, 산술 평균하여 최고 득점자를 최종임용 예정자로 총장에게 추천한다.
- ② 제1항의 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본 대학교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제1항의 기초·전공심사 및 강의심사 시에는 필히 외부 심사위원을 1/3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01.>

제20조(심사결과공개) ① 신규채용에 지원한 사람이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하며, 공개내용에는 심사단계별 심사점수, 판정, 심사위원별 채점점수를 공개한다.

② 지원자 및 심사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1조(연구실적물의 인정) 연구실적물의 인정기준 및 인정률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삭제 <2007.11.01.>

제 4 장 승진임용

제23조(승진임용의 시기) 교원의 승진임용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로 연 2회 시행한다.

제24조(승진소요 연수) ① 직위별 승진 소요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5.01., 2020.03.01.>

현 직위	승진되는 직위	승진소요 연수	비 고
조 교 수	부교수	6년(8년)	()는 박사학위 미 취득 교원
부 교 수	교 수	5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학문적 업적 또는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면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③ 해외 연구기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국내 연구기관 및 타 대학에서의 연수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승진 소요연수 산정에 있어 타 대학에서의 동일 직급이상의 재직연수는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에 대해서는 정관 제 44조(휴직의 사유)에 따른다. <개정 2020.10.01.>

제25조(승진임용 요건) ① 교원은 승진임용에 있어서 제24조에 규정한 승진소요 연수 이외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해 평가된 업적이 다음의 직위별 평균평점을 충족한 교원으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승진심사 자기평가서에 따른 인터뷰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원임용(승진) 평정서를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이 평정하며, 승진임용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07.11.01, 2011.11.01., 2012.05.01., 2020.03.01., 2020.10.01., 2022.10.01.>

승진되는 직위	승진소요 연수	심사대상 기간	평균 평점	비 고
조 교 수 → 부 교 수	6년(8년)	최근 5년(7년)	750점	- 임용기간 내 업적평가 점수를 적용 - ()는 박사학위 미 취득 교원
부 교 수 → 교 수	5년	최근 4년	810점	

② 제1항의 승진직위별 평균평점은 심사 대상기간 중에 보유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누적된 평균점으로 한다. <개정 2007.11.01.>

- ③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시에는 박사학위 취득 교원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 미 취득 교원에 대해서는 현저한 학문적 업적과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때 교원인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면 그 자격이 주어진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교수로 승진 시에는 이 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장 교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⑤ 승진후보자는 승진예정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승진심사 자기평가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진심사 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교수 승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실시한다. <신설 2007.11.01.> <개정 2020.10.01.>

제26조(승진임용의 유보) 이 규정에서 정한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교원이라도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을 유보한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음주운전,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05.01., 2020.10.01.>
 - 가. 강등, 정직 18개월
 - 나. 감봉 12개월
 - 다. 견책 6개월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등과 관련 행정상의 처분(시말서)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평소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 자기평가서’ 및 인터뷰 심사결과와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개정 2007.11.01.>

제27조(호봉승급의 제한) 교원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승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제27조의1(호봉승급제한 해제 시 호봉승급 방법) 호봉승급이 제한되었다가 그 제한사유가 해소되어 호봉을 승급할 때에는 제한사유 해소 이후 최초의 호봉승급일에 승급제한 직전의 호봉에 1호봉 가산하는 방법으로 승급한다. <신설 2019.01.24.>

제28조(직위별 비율) 승진임용 시 교원의 직위별 인원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위

별 인원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재임용

제29조(재임용 시기) 교원의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 연2회 시행한다.

제30조(재임용 심사) ① 제12조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동안의 학생교육·학문연구·산학협동·사회봉사·수범업적 및 대학발전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교원업적평가 점수 및 재임용 심사 평정에 따라 평가하여 재임용 한다.

② 삭제 <2012.05.01.>

③ 재임용 심사 평정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1조(재임용 요건 및 제한) ① 재임용 대상자는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업적이 다음 표의 평균평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교원임용(재임용) 평정서를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이 평정하며, 평균평점 730점 이상인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01., 2011.11.01., 2012.04.01., 2012.05.01., 2020.03.01., 2020.10.01., 2022.10.01.>

직 급	임용계약기간	심사대상기간	평균평점	비 고
부 교 수	6년	최근 5년	730점	- 임용기간 내 업적 평가 점수 반영 - ()는 신규 임용 시
조 교 수	3년(2년)	최근 4년(1년)	730점	

② 삭제 <2007.11.01.>

③ 임면권자가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요건과 관계없이 재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01., 2020.10.01.>

제 6 장 정년보장 임용

제32조(정년보장임용 대상)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원으로 한다.

1. 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임용기간 3년이 만료되는 교원
2. 삭제 <2012.05.01.>
3.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예정인 교원

제33조(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정년보장 임용의 심사기준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규정에 의한다.

제34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3.01.>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0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⑤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03.01.]

제 7 장 휴직·복직 및 상벌

제35조(휴직·면직 및 복직) 교원의 휴직·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표창) 본 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교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표창의 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징계)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징계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8조(준용) ① 2002년 1월 1일 이후 계약임용 되는 교원도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과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 복무, 징계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및 교육부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02.09.01.부터 시행한다.
2. 교원임용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2002.09.01.현재 교수의 직위로 임용되어 정년보장임용을 받지 못한 교원이 차기 재임용시의 연구실적물은 200%이상으로 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03.05.01.부터 시행한다.
5. (경과조치) 제22조는 2003.09.01.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조교

수, 부교수인 교원의 임용기간이 제23조의 승진소요연수에 1개월 미달할 경우에도 23조의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6. 이 개정 규정은 2004.08.20.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은 2005.03.01.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은 2005.12.01.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은 2006.09.0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가. 2002.01.01.이전 신규 임용된 교원은 계약서 체결은 생략한다.

나.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심사의 요건 충족(교원업적평가 평균점수)에 있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의 규정(연구실적)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향후 3년간(2009.09.01.임용 대상자 포함)으로 한다.

승진되는 직위	연구실적	재임용 직급	연구실적
전임강사 → 조교수	200%	전임강사	200%
조 교 수 → 부교수	300%	조 교 수	300%
부 교 수 → 교 수	350%	부 교 수	350%

10. 이 규정 개정 규정은 2007.07.01.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07.01.01.부터 시행한다.

① 제11조의2제2항(연봉제) 및 제16조(교원의 자격)의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신규 임용계약 되는 교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의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승진대상자 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승진임용요건)과 제31조제1항(재임용 요건 및 제한)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 승진 심사

가. 현 부교수가 교수로 승진할 때

나. 현 조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할 때

다. 현 전임강사가 조교수로 승진할 때

2. 재임용 계약

가. 현재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차기 재임용 시

12. 이 규정 개정은 2009.03.01.부터 시행한다.

13. 고등교육법 제14조①항 개정(법률 제9356호)과 관련하여 2009.01.30.부터 '학장'을 '총장'으로 하고 '부학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14. 이 개정(2009.03.10.) 규정은 2009.04.01.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규정은 2011.11.01.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12.05.0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2012.04.30. 현재 전임강사로 재직중인 교원은 2012.05.01. 조교수(B)로 전환하며, 조교수(B)로 전환된 교원의 근무기간 만료일 및 승진소요 연수 경과 일을 산정할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조교수(B) 근무기간 및 승진소요 연수에서 전임강사 재직기간을 감산하여 산정한다.

② 2012.04.30. 현재 조교수로 재직중인 교원은 2012.05.01. 조교수(A)로 전환하며, 조교수(A)로 전환된 교원의 근무기간 만료일 및 승진소요 연수 경과 일을 산정할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조교수(A) 근무기간 및 승진소요 연수에서 조교수 재직기간을 감산하여 산정한다.

17. 이 개정 규정은 2016.02.0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6.02.01. 현재 재직 중인 산학협력중점 및 교육중점교원의 경우 현 직급을 계속 유지한다.

18. 이 개정 규정은 2017.03.01.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 규정은 2019.01.24.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 규정은 2019.03.01.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 규정은 2020.03.01.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 규정은 2020.10.01.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 규정은 2022.10.0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7.11.01.> <개정 2020.10.01.>

승진심사 자기 평가서(제25조제5항 관련)		
소속계열(학과):	직위:	성명:
대상기간:		
1. 교육활동 -강의 -학생지도 -취업지도 2. 연구 및 산학협력 -연구활동 -산학협력 및 교류활동 3. 우수학생 유치 및 홍보활동 -고교방문 홍보활동 -입학설명회 참여 및 유치활동 -산업체 위탁생 유치활동 -기타 홍보활동 4. 품위유지 및 대인관계 -품위유지 -자기계발 -학과 내 인화관계 5. 봉사활동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타교내 및 대외활동 -대학발전에 기여한 사항 -기타사항		
년 월 일		
작성자(본인) 성명		서명(인)
※ 영역별로 페이지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업적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제출기한: 승진예정일 4개월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7.11.01.> <개정 2011.11.01., 2012.05.01., 2020.10.01.>

교원임용 평정서(승진, 재임용)

심사 대상자	· 성명 :			
	· 소속 :		· 직위 :	
	· 대학임용일 :		· 현직위 임용일 :	
	심사대상 기간 :			
평가영역 (배점)		평 점	점 수	비 고
교원업적평가(1,000점)		심사대상기간의 교수 업적평가 평균 점수	/1,000	
적격여부		적 격 / 부 적 격		
구 분	기 관 명	포 상(징 계)명	시 행 일	비 고
상 별 사 항				
종합의견				
20 년 월 일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_____ (서명)				

[별표 1]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인정률

구분	인정기준	인정률(%)	비고
논문 ¹⁾	국내외 저명학술지 ⁽¹⁾	200	
	국제 전문학술지 ⁽²⁾	150	
	국내 전문학술지 ⁽³⁾	100	
	본 대학교 논문집	70	
	기타 논문집 ⁽⁴⁾	50	
	박사학위취득논문	200	
	석사학위취득논문	100	
저서 ²⁾	국제 전문학술서 ⁽⁵⁾	200	
	국내 전문학술서 ⁽⁶⁾	150	
	번역서 ⁽⁷⁾	100	국내에서 출판된 저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 출판사에서 출간한 경우 인정률의 50% 가산
	대학교재 ⁽⁸⁾	100	본 대학교 교원으로서 산업체 인사가 참여한 대학교재를 출간한 경우 인정률의 50% 가산(신규임용 심사대상자는 비교란 제외)
	학술교양서적 ⁽⁹⁾	50	
Proceeding ³⁾	국제학술회의 발표 ⁽¹⁰⁾	50	
	전국학술회의 발표 ⁽¹¹⁾	30	
연구보고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보고서	50	본 대학교와의 협약을 체결한 연구보고서인 경우(신규임용 심사대상자는 비교란 제외)
특허 ⁴⁾	특허	100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산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50	
현장참여	현장프로그램 참여	100	1개월 이상 1건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	100	
창업실적	실험실공장 창업실적	100	
상위자격 취득	기술사 이상 (1건)	100	
연수	교육인적자원부·학화·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의 공인된 연수	100	소정의 시간(120시간 이상 실무내용 비율이 60% 이상)
산업체 현장 연수 및 파견	산업체 현장연수	100	소정의 기간(6개월 이상)
	교육인적자원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파견근무	100	6 ~ 12개월 이내
		50	3 ~ 6개월 이내

구분	인정기준	인정률(%)	비고	
예·체능계 연구실적	공인된 국제전,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공예대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대한민국건축대전	특선이상	200	
		입선이상	150	
		초대·추천작가 및 출품	100	
	특별사·광역시·도의 공모전	특선이상	150	
		입선이상	100	
		초대·추천작가 및 출품	50	
	개인전		100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산
	2인 공동전		50	
	공인된 단체 및 기관의 기획초대전		30	·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언론기관, 공공 문화재단 등에 의한 기획초대전 ·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산
	전문 화랑규모의 기획초대전		20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산
	공인된 단체전 출품(심사위원)		30	· 문예진흥원, 미협 등에 등록된 단체의 단체전 ·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산
	일반 단체전 출품(심사위원)		20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산
	공인된 체육단체의 개인연구 발표회		100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출전		100	
	국제공인 경기 입상		100	
	전국규모 국내경기 입상		100	
체육관계 훈장		100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100	50시간 이상	
국제공인 심판자격		100		

1. 공동연구실적물은 다음의 환산율에 따라 인정한다.

- 1) 1인 연구 : 100%
- 2) 2인 공동 연구 : 70%
- 3) 3인 공동 연구 : 50%
- 4) 4인 이상 공동 연구 : 30%
- 5) 5인 이상 공동 연구 : 1/연구자수 × 100%

2. Proceeding으로 평가받은 후 논문으로 제출할 경우 논문 적용기준에서 Proceeding 적용 기준을 차감 한다.

3. 연구실적물의 인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1) 국내·외 저명학술지

국내·외의 저명학술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논문 게재당시에 SCI (Science

Citation Index),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또는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2) 국제 전문학술지

- ① 국내 SCI(IF 1.0 이하) 또는 확장 SCI, sc SSCI에 등재된 학술지
- ② 논문 게재 당시에 SCI, SSCI 또는 AHCI 중 어느 색인에도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로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외국의 전문학술단체에서 영어, 일어, 독어, 불어 및 중국어 등을 사용하여 간행된 학술논문지

(3) 국내 전문학술지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전국규모 이상으로 평가받거나 등재후보 이상으로 평가된 학술지 단,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 작업이 1차 완료되는 2002년까지는 학술지 간행 연수가 3년 이상이며, 회원수가 인문·사회계열은 100명 이상, 자연·이공계열은 200명 이상이고, 회원이 5개 광역시 이상(타 지역 50% 이상) 분포하는 학술단체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를 한시적으로 전국규모 학술지로 인정한다.

(4) 기타 논문집

(1), (2), (3)항의 학술지를 제외한 모든 논문집, 학술지 등. 단, 정기간행물인 경우는 30%만 인정함.

2) 저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전공분야의 연구저작물로 국내·외에 배포할 목적으로 저술한 것을 말한다. 단, 논문 모음집은 저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국제 전문학술서

기존의 이론과 대비되는 저자의 독창적 논리가 전개되어 있는, 외국의 전문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를 말한다.

(6) 국내 전문학술서

기존의 이론과 대비되는 저자의 독창적 논리가 전개되어 있는, 국내의 전문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를 말한다.

(7) 번역서

외국의 전공관련 학술서를 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8) 대학교재

대학의 강의를 위하여 출판한 전공입문서, 개론서, 원론서, 각론서를 말한다. 단, 실험실습지침서, 수험서, 문제집 등은 제외한다.

(9) 학술교양서적

일반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전공에 관련된 교양서적을 말한다.

3) Proceeding

논문으로서의 체제와 형식을 갖추고 다음과 같은 학술회의의 논문집에 게재된 것을 말한다.

(10) 국제학술회의

국내·외의 저명 학술단체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회의로, 4개국(국내 개최시 5개국) 이상의 발표자가 논문을 발표하는 국제적인 규모와 성격의 학술회의를 말한다.

(11) 전국학술회의

국내전문학술지를 발간하는 저명 학술단체가 정기적으로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

4) 특허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그 특허권이 결정된 것으로, 그 특허의 특허권자나 발명자(또는 고안자)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별표 2] <신설 2007.11.01.>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

NO	경 력 내 용	환 산 인정율(%)
1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3	연구원(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4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동시행령에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6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에 전 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7	박사학위 과정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 (석, 박사과정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8	석사학위 과정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 (2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9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 근무경력	50%
10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의 경력 (주당 5시간 이하, 주당 5시간초과할 때는 시간당 10%가산, 100%까지 인정)	50%
11	중고등학교의 교원 교육경력이 본 대학교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70%
1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50%
13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본 대학교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50%
14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본 대학교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40%
15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총장 및 총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석사학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100%)	50%
16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대학, 전문대학의 체육코치	70%
17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박사과정 재학기간 (3년을 초과하지 못함)	70%
18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 (2년을 초과하지 못함)	70%

NO	경 력 내 용	환 산 인정율(%)
19	대학(전문대학 포함)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20	대학(전문대학포함)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21	대학(전문대학포함)전공한 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22	공과계 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졸업자로서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②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는 항시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 (건설업은 5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 업체에서 그 전공 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100%
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한 중소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업체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80%
24	판사, 검사로 근무한 경력 (경찰경호행정계열은 100%)	90%
25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의 개업기간 (부동산경영과,e-경영정보계열은 100%)	90%
2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자격을 취득한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본 대학교에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되는 경우	100%
2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 병원,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포함)으로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제외한다)	70%
28	의과대학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보건계열의 경우 100%까지 인정)	90%
29	국가, 공공단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사로 근무한 경력	100%
3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서 전임간호원으로 근무한 경력(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70%
31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90%
32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 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의 경력	80%